

광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72696(본소), 2021나72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정산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나72696(본소), 2021나72702(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500213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문병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운식

변론 종결2022. 11. 17.

판결 선고2022. 12. 22.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500213(본소), 2021가단502639(반소)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2,206,000원 및 그 중 55,550,000원에 대하여 2020.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99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증인 D"을 모두 "제1심 증인 D"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 등과 체결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비(소외 회사로부터 99,632,000원, 정부지원금 99,631,000원)를 여전히 지급받을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작계약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설비의 반자동 부분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작계약의 불이행에 따라 소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한 사정들은 원고가 장래에 지급받을 사업비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제작계약의 해제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2차적 전보수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 자체와는 무관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작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협약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그 협약의 규정은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작계약은 이 사건 협약에 연동된 하도급의 성질을 가지는바,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제13조 제2항 제6호2) 규정의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설비의 반자동 부분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제6조3)에서 정하는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작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 제13조와 관련하여 피고가 동조항의 "공급기업 컨소시엄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제조혁신센터가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그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조계약 내용의 변경을 이 사건 협약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4항을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제조혁신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위 규정은 단속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경

판사김진만

판사유상호

1)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제1의 나.항 중 '2021. 3. 7.'은 청구원인 내용에 비추어 '2021. 3. 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제13조(협약해지 등)

② "제조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급기업(원고)"에 대해 협약을 해약하고, "전담기관"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사업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6. "공급기업"이 본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 업무를 "공급기업 컨소시움이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

3) 제6조(협약의 변경)

① "제조혁신센터"와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제안서, 착수계 등 최초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 및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제조혁신센터"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범위 조정으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는 원가계산 기관이 산정한 원가내역서를 첨부해야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임의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경우
"제조혁신센터"로부터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